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73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
예방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7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- 제 출 자: 박종길 의원 외 5인
- 발의일자: 2020. 8. 18.
- 회부일자: 2020. 8. 24.
- 검토기간: 2020. 8. 25. ~ 2020. 9. 3.

2. 제정이유

-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(안 제4조)
- 다.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,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안심지킴이 운영(안 제7조)
- 마. 신고체계의 마련,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바. 협력체계, 협조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사. 교육 및 매뉴얼 작성·배포(안 제12조)
- 아.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, 홍보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4.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동 의안은 현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이를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 다만, 대구광역시 역시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·운용(「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)중인 점 **【후단 별첨 참고】** 고려할 때, 결국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달서구는 (대구시와는 별개로) 구 차원의 별도 행정을 펼쳐야 함.
- 달서구 행정의 실효성 제고(提高) 관점에서 조례안 개별 관련 규정의 적합성(및 실현 가능성)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특히 검토되어야 할 조문은 “~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체계를 마련(안 제4조)”하되,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, ‘특별관리 대상 화장실(안 제5조)’을 집중 점검하며, 이를 위해 ‘안심지킴이’ 인력을 별도 운영(안 제7조)하여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“~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화장실에 부착”도록 한 조문(안 제13조)로 사료되는 바,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특히 필요.

1) 안 제4조: 상시(常時)점검체계 마련 관련

- 조례안에 따르면, 안심지킴이를 “~필요한 경우~운영(안 제7조제1항)” 한다는 조문은 상시(常時)점검체계 마련 규정(안 제4조)과 연관할 경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. 집행부 입장(안 제7조 제2항)확인 후, 관련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조례안에서는 상시점검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항)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¹⁾을 참조하여 ‘월(또는 주)몇 회’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추가(수정)하여 조례안의 ‘상시(常時)’자구에 대한 명확성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사료됨.

2) 안 제13조 : 점검사항 표시 스티커 부착 관련

- 스티커가 부착된 화장실은 구가 보증하는 안심화장실로 해석될 수 있음. 동 안심화장실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달서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(信賴度)가 훼손될 우려도 있는 바, 따라서 집행부는 동 안심화장실에 대해서는 특히 지속적인 사후(事後)관리, 즉 얼마나 상시적으로 (이는 곧 위에서 언급한 ‘월 몇 회’ 자구 신설과 연계될 내용) 점검을 했는지가 행정 신뢰도를 유지하는 주요 사항이라 할 수 있음.

□ 종합 의견

- 결국 상시점검체계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구가 보증하는 안심화장실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, 최소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수(數), 일반 화장실은 물론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에 대한 정기(定期) 점검 횟수(回數) 및 이를 고려한 ‘안심지킴이’ 운용 규모 등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라 조례안 수정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)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
2. 악취의 발산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【별첨 : 조례안과 현행 대구광역시 조례와 비교】

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	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. 2. “민간화장실”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. 3. “불법촬영”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 4. “불법촬영기기”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,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·단체·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 ③ 구청장은 상시점검체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다. <p>제5조(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) 구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. 2. “불법촬영”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 3. “불법촬영기기”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)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)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) ① 시</p>

<p>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 할 수 있다.</p>	<p>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,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,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.</p>	<p>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안심지킴이)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·군 및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,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·군 및 지방경찰청,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(협조)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협조)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(교육 등)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,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</p>	

<p>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)</p> <p>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홍보)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교육 등)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3조(홍보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,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---	---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」 -

검 토 의 견 서

1. 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2.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등 6명(이신자, 김인호, 박왕규, 김귀화, 김화덕)

3. 제안이유

○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(안 제4조)
- 다.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,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안심지킴이 운영(안 제7조)
- 마. 신고체계의 마련,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바. 협력체계, 협조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사. 교육 및 매뉴얼 작성·배포(안 제12조)
- 아.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, 홍보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5. 참고사항[관계법령]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음.

7. 수정내용: 해당없음